

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08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임미애
남인순 · 박희승 · 양부남
박민규 · 송옥주 · 김성범
안호영 · 이해식 · 복기왕
朴芝源 · 서영석 · 허영
김동아 의원(16인)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 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국가는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함(안 제7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물복지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동물복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 동물은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
3. 동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공포 및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동물복지”란 동물이 종별 특성과 생애 단계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고, 고통·공포·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으며, 종 고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지 아니하고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먹이를 공급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즐거움, 편안함, 활력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의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변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복지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복지의 날) 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물복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8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0조(시·도 동물복지계획)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9조에 따른 시·도 동물복지위원회(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소관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물복지정책의 기반 조성

제12조(동물복지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9.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10. 「동물보호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된 민간 기관·법인·단체 또는 소유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하는 자가 작성·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본인과 그가 소유·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복지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복지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한 자와 그 자가 소유한 맹견에 관한 정보

3.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허가가 철회된 사람과 그 사람이 소유한 맹견에 관한 정보

4. 「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

5.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허가번호·등록번호, 업체명 및 영업장의 전화번호·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항 후단의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 정보 중 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정보 등의 수집·관리·공개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동물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난 시 동물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의 신속한 대피·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관련 기관·단체와 동물복지에 관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장 동물복지위원회

제18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정책의 조정·협력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계획과 지역의 주요 동물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동물복지진흥원

제20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분석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3.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4.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5.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등의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지원
6.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관리
7.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등 지원

9. 「동물보호법」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원
 10.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관리·감독 지원(같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포함한다)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발생 예방 및 단속 지원
 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13.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니면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

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진흥원의 임직원

2. 제18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19조에 따른 시·도 동물복지위원회(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추진단의 운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정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설립비용) 진흥원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고용관계 및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부칙 제2조제8항에 따라 농정원이 채용한 사람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고용관계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설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에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설립위원회의 설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와 농정원이 부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 및 권리와 부담한 의무를 승

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위원회 또는 농정원의 명의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진흥원은 농정원의 직원 중 동물 보호·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설립추진단에서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도의 동물복지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계획으로 본다.

③ 제11조에 따른 최초의 시행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최초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는 그 시행계획의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 및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례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본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 당시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 중 이 법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이 법에 해당하는 업무는 그 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한다. 이 경우 해당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95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상습범의 가중을 포함한다) 및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9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 제101조제4항제7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의 행위 중 이 법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동물복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로 하고, 각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도”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15.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동물보호활동 및 교육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을 각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동물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